

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7의2] <신설 2013.8.27>

시장개설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(제354조의3제1항 및 제3항 관련)

(단위: 억원)

시장개설 단위	금융투자상품의 범위	최저자기자본
1e-1	채무증권, 지분증권, 수익증권, 파생결합증권, 증권예탁증권	2,000
1e-11	지분증권, 증권예탁증권	1,000
1e-12	채무증권, 수익증권, 파생결합증권	1,000
2e-1	장내파생상품	3,000

비고

- 1. 거래소시장의 회원은 법 제38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거래소 결제회원과 매매 전문회원을 말한다.
- 2. 자기자본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일 이후 거래소허가 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.